

표창 및 특별 격려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변경(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교 재학생 중 외부 공모전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본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에게 특별 격려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입상 학생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나은 성적으로 이어나가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제2조(시상 범위)

시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전국대회와 일반대회로 구분하고 입상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국대회, 일반대회는 등위(수)가 있는 대회를 말한다. 00학회발표에서 00학회상인 경우 해당 안 됨)

1. 전국대회

국내.외 공모전, 4년제 대학교, 정부기관, 광역시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의 최고상 시상기준으로 입상 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 1) 1위: 50만원, 표창
- 2) 2위: 30만원, 표창
- 3) 3위: 20만원, 표창
- 4) 4위: 10만원, 표창

2. 일반대회

2년제 대학, 시, 군, 구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 공사, 정부산하기관,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특별법인 등), 각종 사단법인 지회/지부,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의 최고상 시상기준으로 입상 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 1) 1위: 30만원, 표창
- 2) 2위: 20만원, 표창
- 3) 3위: 10만원, 표창

※ 단, 디자인대학은 일반대회 입상시 국내.외 대회 표창 및 특별격려 장학금 지급은 아래와 같다.

- 1) 1위 : 20만원, 표창
- 2) 2위 : 10만원, 표창

제3조(수혜 횟수)

동일 학생에 대한 본 장학금의 수혜횟수는 한 학기 1회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단체 입상)

공동작품 또는 단체로 각 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표창은 참여자 개인별로 하고 장학금은 참여자를 대표한 1인에게 지급한다.
단, 팀원의 표창장 수혜 횟수는 한 학기 1회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특별 표창)

각종 공모전 및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권 외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비중 있는 대회인 경우 표창장만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특별 지급)

본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각종 대회 및 공모전에 입상하여 본 대학의 위상강화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 결과에 따라 표창수여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항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7조(기타)

본교(교내 각 기관, 학과(부))가 개최하는 외부 대회(타 대학생이 참가하는 대회), 공모전이 아닌 대회(등수가 있는대회), 영리단체, 민간기관 단독 개최 대회는 표창장과 특별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인제스타마일리지 포상 배점은 일반대회에 준하여 배점 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학생복지처의 내규로 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02년 5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학생취업처의 내규로 한다.(2015.1.1.)
4.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는 학생복지처의 내규로 한다.(2022.3.1.)